

2024년 미추홀구가족센터 예산총칙

2023. 12. 26.

- 제1조 2024년도 미추홀구가족센터의 예산(본예산)은 다음과 같다.
세입·세출명세는 “세입, 세출명세서”와 같다.
- 제2조 세입·세출 예산 총액은 7,258,307천원으로 한다.
- 제3조 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제16조에 의거,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
- 제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터 소요잔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수익자부담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다.
-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보조금에 대한 예산안을 결정·통보하지 못해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예산법 제34조 제1항, 헌법 제54조 제3항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.
- 1) 시설의 기본적인 유지와 운영에 소요되는 안전관리비용, 주식 또는 부시에 관한 비용 및 직원의 인건비
 - 2)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비용
 - 3)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